

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465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5.12.
제 안 자 : 안산시장

1. 제안이유

- 대단위 고층 아파트와, 다가구 주택의 신축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사동과 본오2동에 대한 내무부의 행정운영동 분통승인에 따라 2개의 동사무소가 신설되어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신설동사무소 소재지를 규정

기 관 명	소 재 지
사 2 동	안산시 사동 1304 번지
본 오 3 동	안산시 본오동 796-4 번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 6조 (사무소의 소재지)

- 제 1항 -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.면.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,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

설정하는 경우에는 시·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,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·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며,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에 있어서는 그 시·군의 조례로 정한다. 이 조항에 있어서의 동은 제 4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.

제 2항 - 제 1항의 조례는 당해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
나. 소요예산

○ 없음

안산시청 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안산시청 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소재지) "별표"중 "사동"을 "사1동"과 "사2동"으로, "본오
2동"을 "본오2동"과 "본오3동"으로 하고, "사1동, 사2동, 본오2동,
본오3동"의 소재지는 각각 "별지"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(별 표)

시 청 및 동 사무소 소재지

기 관 명	소 재 지
사 1 동	안산시 사동 1304번지
사 2 동	안산시 사동 1304번지
본 오 2 동	안산시 본오동 796-4번지
본 오 3 동	안산시 본오동 796-4번지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	개 정 (안)	
기 관 명	소 재 지	기 관 명	소 재 지
안산시청	(생 략)	안산시청	(현 행과 같 음)
일 동	(생 략)	일 동	(현 행과 같 음)
사 동	<u>안산시 사동 1304</u> (신 설)	<u>사 1 동</u> <u>사 2 동</u>	<u>안산시 사동 1304</u> <u>안산시 사동 1304</u>
본오1동 ~ 본오2동	(생 략) (신 설)	<u>본오1동</u> ~ <u>본오2동</u> <u>본오 3동</u>	(현 행과 같 음) <u>안산시 본오동 796-4</u>
부곡동~ 안산동	(생 략)	<u>부곡동~</u> <u>안산동</u>	(현 행과 같 음)